

영등포구의회  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4. 11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84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2014년 3월 개관한 영등포구립 여의도디지털 도서관의 명칭 및 주소를 명시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여의도디지털 도서관의 명칭 및 주소 추가 (안 별표 1)

- 명 칭 : 여의도디지털도서관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-1)

나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제29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2014년 3월 18일 개관한 여의도디지털 도서관의 설립에 따라 기관명칭 및 주소를 부가하여 해당 조례의 내용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“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 되지 않으며,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도서관법

### 제4장의2 공공도서관 <신설 2009.3.25>

**제27조(설치 등)**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25>

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"도서관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25>

[제목개정 2009.3.25]

**제29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·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25>

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25>

③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0, 2009.3.25>

## 2 지방자치법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